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5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1조에서는 인용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2) 안 별표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와 관련된 별표에 따라 구청장 관인의 규격을 규정에 맞춰 현행 최대 한 변 2.4cm에서 3.0cm으로 변경함.
- (3)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폐기 공인의 이관 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함.

(4)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6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